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힘내라 대한민국
배포일자	2020. 6. 29.(월)	담당부서	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
담당과장	이상욱 042-481-7680	담당자	박노명 사무관 042-481-7804

관세청, 7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

-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도 운영 -

□ **관세청**(청장 노석환)은 **7월 1일**부터 **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** 제도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.

□ 이들 제도는 **위법·부당한 처분** 등으로 인해 **권리**가 **침해**된 납세자가 **권리구제**를 **요청**할 경우 이를 **전담**하여 **처리**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수출입통관, 관세의 부과·징수, 관세조사 등 일련의 **관세행정 집행 과정**에서 **권리**가 **침해**된 경우 **불복청구 등**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**권리보호 사각지대**를 해소하기 위해 **관세법 개정**을 통해 도입하게 됐다.

□ 우선 '**납세자보호관(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)**'은 관세조사 과정의 **위법·부당한 행위**와 **권리남용행위**에 대한 **권리보호업무 이외에도 수출입 관련법령**을 **집행**하는 과정

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하게 돼 **예방적·적극적 납세자 권리보호**가 **가능**해질 것으로 **기대**된다.

□ 아울러, **관세행정 집행과정**에서 **납세자 권익보호 사안**을 **공정**하고 **투명**하게 **처리**하기 위해,

○ 납세자보호(담당)관과 함께 **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**를 **구성**해 **독립적인 지위**에서 **공정**하게 **운영**될 수 있도록 했다.

○ 그간 **권리보호 사각지대**에 놓여 있던 **관세조사 범위 확대,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**은 물론 **각종 고충민원**까지 **납세자보호위원회**의 **심의대상**에 **포함**하여 **납세자 권익 향상**에 **기여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납세자보호(담당)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는 **관세청과 5개 본부세관(인천,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)**에 설치돼 운영된다.

□ 관세청은 납세자들이 권리보호 제도를 보다 쉽게 **이해**하고, **활용**할 수 있도록 **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 절차** 등을 상세히 알리고,

○ 위법·부당한 처분에 대한 **시정요구권**, **관세조사 연장(일시)중지권** 등의 권한을 **적극적으로 행사**해 **납세자의 권익**을 **한층 강화**하는 등 **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**를 **위해 지속적으로 노력**해 나갈 예정이다.

참고 1. 관세청 및 본부세관 업무연락처
2.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요
3.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업무

참고 1 관세청 및 본부세관 업무연락처

구 분	전화번호	전자우편
관세청 납세자보호관	042) 481-7757, 3298	headadv@korea.kr
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	02) 510-1061~4	seouladv@korea.kr
인천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	032) 452-3033, 5881~2	incheonadv@korea.kr
부산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	051) 620-6051, 6053, 6057	busanadv@korea.kr
대구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	053) 230-5110	daeguadv@korea.kr
광주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	062) 975-8031, 8034	gwangjuadv@korea.kr

참고 2 **납세자보호위원회 개요**

□ 개 요

○ **관세행정 집행 과정**에서 **납세자 권익보호** 사안을 보다 **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**하기 **본청**과 **5개 본부세관**(인천,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)에서 **운영***

* 관세법 제118조의4('19. 12. 31. 신설, '20. 7. 1. 시행)

□ 구 성

○ '20. 7. 1. 납세자보호(담당)관을 제외한 **모든 위원을 민간위원**으로 구성하고 **납세자보호(담당)관실**에서 **준독립기관**으로 운영

- 본청 위원회는 **외부기관의 추천***을 통해 **민간위원을 위촉**하고 **위원장**은 **기재부장관이 추천**한 사람을 **관세청장이 위촉**

* 기재부5, 관세사회2, 세무사회2, 변호사회2, 비영리민간단체4

구 분	본 청	본부세관
인원 수	16명	18명 이내
민간위원	15명	17명 이내
내부위원	납세자보호관	납세자보호담당관
위원장추천	기재부장관	본부세관장

□ 기 능

○ (**조사절차 심의**) 관세조사 범위 확대의 **적법성 등**을 심의하여 **관세조사**에 대한 **견제·감독** 기능을 수행(관세법§118의4①1~4)

○ (**고충민원**) **구제 필요성**은 있으나 **불복기한 경과** 등으로 **법적 수단**이 마땅치 않은 **납세자의 권익**을 구제(관세법§118의4①5)

본부세관		본 청
관세조사 절차	고충민원	
❶ **관세조사 범위의 확대**	-	**재심의 ❶❷❸ +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**
❷ **관세조사 기간 연장**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**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**		
❸ **위법·부당한 관세조사** 및 관세조사 중 **세관 공무원의 위법.부당한 행위**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**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**		
❹ 「관세법」§114조의2제④항 단서에 따른 **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**	-	-
❺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**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**하는 안건	⑤번에 포함됨	-

□ 절 차

○ 납세자는 본부세관장의 **결정에 대하여 이의**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**7일**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**재심 요청**

□ 운 영

○ (**회의 구성**) **납보관 외 민간위원 8명**

○ (**회의 개최**) **법정 처리기한**(20일) 내 심의하기 위해 **수시 개최**

○ (**명단 비공개**) 위원들에 대한 **청탁방지 및 공정한 위원회 운영**을 위하여 **회의 및 위원 명단** 비공개

참고 3 **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업무**

1 관세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

대상 업무

※ (**관세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**) **세관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**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**부당하게 침해**되고 있거나 **침해가 예상되는 경우**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**관세조사** 또는 **관세조사 중인 세관공무원의 행위** 등을 대상으로 함

❶ 관세법 등 관련 **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**

❷ 명백한 탈루혐의 등 **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재조사**

❸ **관세조사 기간 연장**에 대한 **납세자의 (일시)중지**

❹ **관세조사 중**인 **세관공무원의 위법·부당한 행위**

- 관세조사와 관련없는 장부 등 제출요구
- 임의의 조사 기간연장·범위확대
-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 임의보관
- 납세자에게 금품·향응 등 요구
-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(사적 사용)
- 관세조사 종결 통지한 후 질문 또는 장부 등 조사

❺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

2 일반 관세행정 분야 권리보호요청

대상 업무

※ (**일반 관세행정 분야 권리보호요청**) 「관세조사 분야」 **이외의 관세행정 분야에서 발생**하는 **권리보호요청**을 **대상**으로 함

❶ 고충·불복·체납완납 등의 절차 완료 후 **후속처분 지연**

❷ **사전예고 없이 압류** 또는 **과세자료 소명없이 고지**(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)

❸ **본인의 과세정보 열람 요청**에 대한 **거부(지연)**

❹ 납세자에게 **금품·향응 등**을 **요구**

❺ **납세자가 제출한 자료**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**타인에게 제공(사적 사용)**

❻ **과세자료 처리와 관련 없는 자료(소명)**를 **무리하게 요구**

❼ 해명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를 **정당한 이유없이 처리 지연**

❽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**적법 절차 미준수**로 인한 **권리침해**

❾ 현장확인 시 출장목적과 련련 없이 **무리하게 서류 등 요구나 확인**

❿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**에 준하는 사유**로 납세자의 권리가 **침해**되는 경우

3 고충민원

구분	내용
대상	※ (**고충민원**) **세관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**으로서, **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**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·이익이 침해되었거나 **불편 또는 부담**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**납보관 제외 업무와 고충민원 제외대상 업무 이외**의 **모든 행정처분이 대상**
고충민원 제외대상	※ (**제외대상**)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또는 「관세법」에 따른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로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것으로 불복청구 등의 주된 이유와 고충민원의 주된 이유가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, 사유가 있는 사항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 ❶ 관세법 등에 따른 **쟁송절차**가 **진행** 중이거나 **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** ❷ 관세법에 따른 **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**이거나 **결정이 완료된 사항** ❸ 감사원장 등의 **감사결과**에 따른 **시정지시에 따른 처분** ❹ **밀수신고 등 고소·고발** ❺ **관세법상 통고처분** 및 **고발** ❼ 관세법 등 경정청구,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**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** ❽ **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등**이 **진행 중인 사항**